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76
------	------

2021. 3.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송명화 의원 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3.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송명화 의원)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행정사무 위탁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안 제4조의3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또는 내용 등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 현황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서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현재 서울시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4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6,897억원에 달하고 있음.

< 연도별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 >

연 도	2018(12월말)	2019(12월말)	2020(12월말)	2021(1월)
사무 수(개)	392	388	403	404
예산(억원)	7,081	8,190	9,433	6,897 ¹⁾

-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으나, 민간위탁 사무와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평가가 요구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연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재위탁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는 민간위탁의 최초 실시 단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6년 후에는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재검증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확산과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다. 중요내용 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 제2조·안 제4조의3)

-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중요내용” 을 정의하고(안 제2조 제6호),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위탁절차에 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안 4조의3 제1항).

1) 2020년 12월 31자로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서울물재생 시설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위탁 사업비 1,970억원이 감소되었음.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중요내용” 은 위탁유형의 변경, 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을 예시하고 구체적인 경우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이하 “지침”)에 따르면,
 - ▶ 위탁유형 변경, ▶ 다른 사무의 추가나 전면 변경, 분리의 경우는 당초 위탁사무와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이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지침의 관련 내용 >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지난 3년간 민간위탁 사무의 추가, 통합, 분리, 위탁기간·유형의 변경 등을 이유로 신규 민간위탁 사무와 같이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례는 17건에 달함.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신규위탁 추진 현황 >

연번	연도	위탁사무명	소관부서	사무 변경사항
1	2018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지역상생경제과	사무(시설) 추가
2	2018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남산국악당 관리운영	역사문화재과	사무통합
3	2019	청년창업꿈터 통합운영(1호·2호점)	투자창업과	사무(시설) 추가
4	2019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투자창업과	사무통합
5	2019	영화창작공간 운영	경제정책과	사무분리
6	2019	독립영화 활성화	경제정책과	사무분리
7	2019	홍릉 바이오 의료 R&D양커 시설 관리 및 운영	거점성장추진단	사무(시설) 추가
8	2019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거점성장추진단	사무(시설) 추가
9	2020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1호점)	아이돌봄담당관	위탁기간 변경
10	2020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2호점)	아이돌봄담당관	위탁기간 변경
11	2020	흥건익가옥(역사가옥) 운영	한옥건축자산과	사무분리
12	2020	배림가옥(역사가옥) 운영	한옥건축자산과	사무분리
13	2020	중량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중량물재생센터	사무통합
14	2020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청년청	사무(시설) 추가, 유형변경
15	2020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	투자창업과	사무(시설) 추가, 유형변경
16	2020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문화정책과	사무분리
17	2020	재개발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주택정책과	사무통합

- 개정안은 “지침”의 민간위탁 처리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상향 규정해 위탁사무의 임의적인 내용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방만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위탁사무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예시로 들고 있는 ‘위탁사무의 내용변경’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칙으로 포괄위임해 입법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 따라서, 조례로 민간위탁 제도 개혁의 핵심이 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대강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u>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u>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u>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u>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중요내용”에 대한 정의는 위탁사무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을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전면변경, 기존 위탁사무

의 분리와 그 밖에” 로 수정해 입법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려고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내용의 변경을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변경, 기존 위탁 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6호).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76
----------	---------

제안년월일 : 2021년 3월 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요내용”에 대한 정의는 위탁사무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내용 변경 등”을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로 수정해 입법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내용의 변경을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 을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u>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u>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u>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u>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u><신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u></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u>경우에는</u>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 ----- <u>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